

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안내

OECD 가입국(한국 포함) 등이 역외탈세 방지 및 자발적
납세의무 증진을 목적으로, **MCAA*** 협정에 따라 해외 납세의무자로
확인된 고객의 금융정보를 협정 체결 국가와 교환하는 제도를
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*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
Financial Account Information

이에 따라 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외에 납세의무가
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

신규계좌

-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대상 상품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신규고객에 대하여는
가입시점에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(본인확인서류 수취 등)
가 진행됩니다.



기존계좌

-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개인고객에 대하여는 은행이 보유하고
있는 고객정보 확인 또는 본인확인서 수취 등을 통해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
여부를 확인합니다.
-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좌잔액이 미화 25만불을 초과하는 기존 법인(단체)
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확인 또는 본인 확인서 수취 등을
통해 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


적용상품

- 예금, 적금, 신탁, 펀드, 연금계약 등
※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 또는 연금상품, 세금우대상품, 대출상품 등은
적용대상 상품에서 제외됩니다.



수집대상 정보

- 이름, 주소, 조세목적상 거주지, 생년월일, 납세자번호, 계좌번호, 제출 대상일 기준
계좌 잔액 또는 평가액, 이자총액 및 배당총액, 적립자산의 총 매각대금 또는
상환대금
- 법인(단체)의 실질적 지배자가 해외 납세의무자인 경우 법인(단체) 및 실질적
지배자의 이름, 주소, 조세목적상 거주지, 생년월일, 납세자번호
- 대상 계좌가 해지된 경우, 계좌 해지 사실

단, 미국 납세자의무자로 확인될 경우, 기존 FATCA 기준에 따라
미국 국세청으로 금융정보가 통보됩니다.



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요청하는 본인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